

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43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9./~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(2013년 12월 31일)이 도래함.
-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기금 업무가 타 기관 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- 법제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의거 조문을 정비함.

□ 주요내용

-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 연장 변경(안 제2조의2)
- 기관명칭 변경(안 제4조의4)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있음

- 입법예고 : 2013. 7.25. ~ 8.14. (21일간)
- 검토결과 : 의견반영
 - 법제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변경'
 - 존속기한 조항 및 부칙 조항 문구 조정

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시장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시” 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 제11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4조의2제1항 중 “제4호 내지 제8호” 를 “제4호부터 제8호까지” 로 하고, “안산시 내에” 를 “시내에” 로 하며, “제1호 내지 제3호” 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에 따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에 따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은행법” 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융자를 「은행법」 ” 으로 한다.

제4조의3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4조의4제1항 중 “제58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58조에 따른” 으로 하고 “경기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경기도조례에 따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환경관리공단” 을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2항에 따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8조 규정” 을 “제18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4항까지에 따른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4항까지에 따라” 로 하고, “환경관리공단” 을 “한국 환경산업기술원” 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“운영” 을 “운용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에 따른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에 의하여” 를 “제1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13조 제1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15조 제1항 중 “의한다.” 를 “따른다.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환경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과장 임 흥 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담당 이 정숙
	담당자 성명·전화	안준식 (행정 2613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<u>시장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<u>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.....</u> ②에 따라</p>
<p>제2조의 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의 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
<p>제3조(기금의 조성)</p> <p>①(생 략) 1. 시 출연금 2. (생 략) 3. 기타 수입금 ②(생 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 1.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.....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의..... 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기금의 용도)</p> <p>①(생 략) 1. ~ 10.(생 략) 11. 기타 환경보전 사업 ②(생 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 1. ~ 10.(현행과 같음) 11. 그 밖의..... 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의2 (보조·융자대상 및 조건)</p> <p>①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 대상은 <u>안산시내에</u>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한하며,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한한다.</p>	<p>제4조의2 (보조·융자대상 및 조건)</p> <p>①.....제4호부터 제8호까지.....시내에</p> <p>.....제1호부터 제3호까지....</p>

현 행	개 정 안
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(변경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고자 하는 자와 같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	1.에 따라.....에 따라.....
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	2.에 따라.....
3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	3.에 따라.....
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용 무공해·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	4.에 따라.....
5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해·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	5.에 따라.....
6. 「하수도법」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오·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(다만,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)	6.에 따라.....
7.(생 략)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조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.	7.(현행과 같음) ②.....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.....
1. ~ 3.(생 략)	1. ~ 3.(현행과 같음)
③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조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.	③.....에 따른.....
1. ~ 3.(생 략)	1. ~ 3.(현행과 같음)
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자의 절차, 이자의 불입, 이자차액보전금, 이자취급수수료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.	④.....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용자는 은행법.....
제4조의3 (보조 및 용자신청)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제4조의3 (보조 및 용자신청)에 따라.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 4(이자차액 보조사업 등)	제4조의 4(이자차액 보조사업 등)
<p>① 시장은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「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"경기도조례"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 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용 무공해·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 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융자받을 경우 경기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받은 이자차액을 제외하고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의 4(이자차액 보조사업 등)</p> <p>①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② 시장은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액 중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②.....</p> <p>.....<u>한국환경산업기술원</u>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③ 시장은 제4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「환경개선특별회계법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해·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공급시설 1기소당 융자액이 7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③.....</p> <p>.....</p>
<p>④ 시장은 제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자가 악취를 개선하고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14조에 따라 폐열에너지회수설비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, 해당시설의 설치로 악취방지시설의 악취저감 효율이 악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결과 10%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액 중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기업체가 부담 할 이자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④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자보조액은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차액보전율 범위 이내에 한한다.</p>	<p>⑤.....<u>제1항 까지에 따른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 또는 환경관리공단, 에너지관리공단의 융자결정서를 첨부하여 융자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	<p>⑥.....<u>제1항 까지에 따른</u></p> <p>.....<u>한국환경산업기술원,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시장은 기금을 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기금 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..... 운용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에 따라</p>
<p>제11조(기금운용의 계획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(생 략)</p> <p>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</p> <p>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11조(기금운용의 계획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에 따른</p> <p>1. ~ 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그 밖의</p> <p>③제1항에 따라</p>
<p>제13조(결산 및 보고)</p> <p>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(생 략)</p>	<p>제13조(결산 및 보고)</p> <p>①.....</p> <p>.....에 따른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</p> <p>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</p> <p>②(생 략)</p>	<p>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</p> <p>①.....</p> <p>.....에 따른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